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5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55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측 인사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아가,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반영

하여 전문가위원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6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명확히 정하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을 수급자 대표 3명과 시민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에서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② (생략)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6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u>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u> 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u>5명 이내</u> 2. 공익을 대표하는 <u>사람 5명 이내</u>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16명</u> ----- ----- ----- ----- ----- ----- 1. ----- <u>관련된 전문가</u> ----- ----- ----- ----- <u>5명</u> 2. ----- <u>사람으로서</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5명 이내</u> ④·⑤ (생략)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u>구성·운영</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당하는 사람 5명</u> 가. <u>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상</u> 나.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u> 3. ----- ----- -----<u>5명</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u>구성·운영 및 위원</u> <u>의 구체적인 자격과 위촉·지명</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0조¹⁾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6인의 당연직 위원과 전문가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 등 10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16인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위원 구성에 있어 수급자 대표 및 시민단체²⁾가 추천하는 공익대표위원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요건 중 관련 학문 전공 등의 요건을 삭제하여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

구 분		현 소속 및 직위
당연직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복지 전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사회복지 전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보건 전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정책 전공)
		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 (교육 전공)
	공익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수급자 개인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현실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으로 두고 있는 취지는 기초생활 급여를 통한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수급자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역할을 동일선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 대표를 공익 대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급자는 직역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일종의 상태로서, 현재 수급자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체나 조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³⁾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 위원 재직 중 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계속해서 ‘수급자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3명 이상,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을 합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수는 5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이라는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은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폭넓게 심의·검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공익대표의 위촉요건 및 절차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수급자 대표 3인만 별도로 규정하기 보다는 공익대표 5인 모두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497